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1 12(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1. 13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1. 19(월) 제20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김진영)
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수요 발생에 따른 한시정원 증원을 통한 기준정원을 변경하여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업무수요 발생에 따라 한시정원 증원을 통한 기준정원 변경 및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정원의 총수는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,

※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- 총 정원을 당초 608명에서 21명이 증가한 629명으로 총수를 변경하고, 정원 증원은 일반직 정원 중 9급 21명을 증원하여 증원 인원중 20명은 본청으로, 1명은 직속기관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조정 및 기준정원 변경에 따라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08명”을 “62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96명”을 “61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정원 중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한시정원) ① 집행기관의 정원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시정원 21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29	629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06	606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5	10	2	4	1	8
6급 이하	577	577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